

신상변동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1일		
신고인	보 훈 번 호		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과의 관계		성명	
	주 소					
	전 화 번 호		휴대전화번호			
변동 내 용	구분	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과의 관계		성명	사유	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일
	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					
	지원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					
	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	성 명		행방불명일	소재 확인일	비고
	성명, 주소, 생년월일 또는 그 밖의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	개 명		그 밖의 변동 사항		
		개명 전 성명	개명 후 성명	변동 전	변동 후	변동 사유
	군 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	변동 전		변동 후		변동 사유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사망한 경우: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. 국적을 상실한 경우: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.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: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. 지원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: 판결문 등본 1통 5. 성명·주소(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합니다)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: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6. 군 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: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※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주민등록표 등본(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,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[]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확인

담당	주무	과장	(지)청장